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1294
----------	------

2020년 3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자 : 김호평 의원 외 13명
- 나. 제안일 : 2020년 2월 5일
- 다. 회부일 : 2020년 2월 12일
- 라. 상정일 : 제29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0년 2월 28일 상정·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호평 의원)

### 가. 제안이유

-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1호).
-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 「청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다. 기 타 : 입법예고(2020. 2. 17. ~ 2020. 2. 24.) 결과 : 의견 없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기본법」 제정(2020. 2. 4.)에 따라 동 법 제정 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반영하여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청년정책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음.
- 제정된 「청년기본법」(참고 1 참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동 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0년 8월 5일이나, 법령의 취지를 살려 서울시 조례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선제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 〈청년기본법 주요 내용〉

- **(목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제1조).
- **(기본이념)**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제2조).
- **(정의)**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함(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청년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며, 청년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함(제4조 및 제5조).
- **(청년의 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함(제7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8조 및 제9조).
- **(계획 수립 및 시행의 협조)** 효율적인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국무총리는 관련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 정책연구 등을 규정함(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청년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소속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제13조 및 제14조).

-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청년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고,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함(제15조).
- **(청년정책책임관의 지정 등)**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 하도록 함(제16조).
-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함(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 **(권한의 위임·위탁 등)**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국회 보고 의무,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이는 「청년기본법」 제정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바탕으로 서울시 청년정책을 내실화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청년청은 개정조례안에 동의하고 있음.

### 1) 청년의 범위(안 제3조제1호)

- 안 제3조는 청년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제정된 「청년기본법」의 내용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u>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 1. ----- 「 <u>청년기본법</u> 」----- ----- -----.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 당시(2015년) 「청년기본법」 등의 입법 미비로 청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sup>1)</sup>을 준용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 금번 「청년기본법」의 제정으로 조례상 청년의 범위를 동 법(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규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임.
- 다만, 「청년기본법」에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청년정책의 필요와 특성에 따라 청년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음.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 그동안 저출생, 고령화 시대에 청년의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통일된 정의가 미진했던 실정이며, 여전히 중앙부처별,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탄력적으로 규정 및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임.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국내 법령 및 정책 상 청년의 범위>**

법령/정책		연령	법령/정책	연령	
통계청(청년실업률)		15세~29세	청년창업중소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청년고용 촉진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조세 특례 제한법	청년상시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원칙: 15세~29세 공공기관·지방공기업 : 15세~34세		청년 정규직 근로자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상인)	39세 이하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시)	19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15세~34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청년창업기업	창업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법률	대통령령 위임		청년근로자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5세~29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시행령 (청년창업자)	39세 이하		청년상시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청년실업자)		15세~34세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시)	15세~34세 (병역 이행 시 병역 기간 차감)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2쪽) 인용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별 청년의 범위>**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지역	연령	관련 조례
서울	15세~34세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강원	18세~34세	「강원도 청년 기본 조례」
부산	18세~34세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충북	15세~39세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
대구	19세~39세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충남	18세~34세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인천	19세~39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전북	18세~39세	「전라북도 청년기본조례」
광주	19세~39세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전남	18세~39세	「전라남도 청년 기본 조례」
대전	19세~39세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경북	15세~39세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울산	15세~34세	「울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경남	19세~34세	「경상남도 청년 발전 기본 조례」
세종	15세~34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제주	19세~34세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	15세~34세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국회 정무위원회(2019. 9.) 검토보고서(33쪽) 재인용

○ 서울시의 정책별 청년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서울시 청년 사업별 청년 연령 현황>**

정책명	청년의 범위	관련 근거(조례 등)
청년수당	만19 ~ 만34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청년일자리	*만18 ~ 만34	「서울특별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 제2조 및 계획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준용 * 만18세 : 고졸 기준
청년주택	만19 ~ 만39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청년공간	만19 ~ 만39	「서울시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청년창업	39세 이하	「서울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제2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준용
청년정책네트워크 서울청년시민위원	만19 ~ 39	계획서
청년미취업자 지원	15 ~ 29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 청년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되게 되면 구성원간의 동질성이 저하되어 정책별 효과성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바, 청년의 범위에 대해서는 「청년기본법」을 준용하고,
  - 정책별로 청년의 범위를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년층의 구체적인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청년의 범위를 설계하는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안별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청년기본법」 제정이후에도 청소년의 범위<sup>2)</sup>와 청년의 범위가 중복되는 점 등은 여전히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바, 정책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청년층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 청년의 국제협력(안 제19조)

- 안 제19조는 서울시 청년사업 중 청년의 국제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신 설>	<u>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u> <u>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u> <u>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u> <u>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u> <u>안을 강구하여야 한다.</u>	제24조(청년 국제협력 지 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청년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 회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 을 마련하여야 한다.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청년의 국제협력 강화 등 동 사업이 서울시 청년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서울시 청년들의 국제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의 활동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한 청년들의 현실을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 집행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청년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감당할 문제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볼 때, 「청년기본법」이 「청소년 기본법」, 「아동복지법」 등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유사 법령<sup>3)</sup>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만

3) 정부지원 관련 유사 입법례

관계법령	관련 조문
청소년 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b>일부</b> 를 보조할 수 있다. ②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단체의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할 수 있다. ③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시설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보조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b>전부 또는 일부</b> 를 보조할 수 있다.
아동 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b>전부 또는 일부</b> 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대리양육이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명확한 역할 및 필요한 재원에 대한 분담, 경비의 보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할 경우 국비 조달 등 소요 자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적극적인 자원 확보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청년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p>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 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④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u></p> <p>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 청년지원 및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을 널리 홍보하고 교육하여야 한다.</p>

### 3) 청년의 날(안 제22조의2)

- 안 제22조의2는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홍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계법령	관련 조문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 서울시는 이미 2015년부터 매년 “서울청년주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바, 청년의 날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 「청년기본법」에서 지정하는 청년의 날에 맞춰 통일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실시하는 것은 청년의 문제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문제를 공유하는데 일정 부분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최근 3년간 서울청년주간 집행내역〉**

실행 연도	집행액	비고
2017 서울청년주간	156,766천원	청년허브에서 사업 집행
2018 서울청년주간	132,634천원	청년허브에서 사업 집행
2019 서울청년주간	180,611천원	청년청에서 (용역) 집행 - 최계바라 기획사 및 신촌문화연구그룹

**〈서울청년주간 연혁〉**

행사 일시	제목	참여인원	홍보 포스터	주요 프로그램
2015년 7월 13일~ 7월 19일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	2,000여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의회를 통한 청년정책 의제 발의</li> <li>- 서울 청년활동공간 현장 투어</li> <li>- 공연, 전시, 퍼포먼스, 도심캠핑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li> <li>-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정책 담론 확산</li> </ul>

<p>2016년 11월 11일~ 11월 13일</p>	<p>너를 듣다</p>	<p>2,643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 청년활동공간 현장 투어</li> <li>- 세대에 갇힌 청년의 위기와 도약, 청년활동의 질문과 사고, 사유를 확장하는 N개의 키퍼런스</li> <li>- 지역과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필요와 고민을 나누는 전국 무지방 네트워크 진행</li> <li>- 청년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공유</li> <li>- 청년매력마켓</li> </ul>
<p>2017년 10월 26일~ 10월 29일</p>	<p>변화를 감각하다</p>	<p>10,0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럽 청년보장정책의 특색인 지역화와 전국화를 화두로 유럽과 서울이 소통하는 국제키퍼런스 (청년보장 포럼)</li> <li>- 청춘콘서트 &amp; 청춘박람회 연계</li> <li>- 무중력투어: 무중력지대 G밸리에서 마음껏 펼쳐보는 장</li> <li>- 청년활동박람회&amp;청년정책 전시</li> <li>- 전국활동가 네트워크</li> </ul>
<p>2018년 10월 25일~ 10월 31일</p>	<p>다른 차원을 여는 사람들</p>	<p>3,842명 (온라인 16,971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정책의 향후 방향 및 변화가 빠른 청년문제 진단, 설계, 실행 방안 모색(청년학회)</li> <li>- 박람회&amp;청년단체부스/자치구 및 전국 지역활동가 네트워크</li> <li>- 청년문화 참여프로그램 운영</li> <li>- 청년정책 집중 홍보</li> </ul>
<p>2019년 10월 28일~ 11월 3일</p>	<p>시선이 만나다</p>	<p>5,40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학회: 청년연구자 학술모임</li> <li>- 청년포럼: 시민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워크숍, 토론회</li> <li>- 청년활동박람회: 청년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캠페인 및 정책홍보</li> <li>- 청년교류해: 전국활동가 및 연구자 등 교류회</li> <li>-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활동 공간투어</li> </ul>

- 다만,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청년의 날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 인바, 대통령령 제정 사항 등 향후 추이에 따른 조례 반영 사항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4) 표창(안 제24조)

- 안 제24조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청년기본법」 제26조의 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청년기본법
<신 설>	제24조(표창) <u>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u>	제26조(포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한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법 제26조제2항에 따르면 “포상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서울시 시민표창의 일반 조례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최근 5년간 서울시의 시민 표창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2015년 대비 454건(5.2%p)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바, 표창의 영예성과 엄중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시민 표창 방안 마련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최근 5개년도 시민표창 운영실적〉

(단위 : 명)

연도	총계	시민표창		
		표창장	감사장(감사패)	상장
2015년	8,595(↑28.2%)	5,273	143	3,179
2016년	8,822(↑2.6%)	5,685	75	3,062
2017년	8,873(↑0.6%)	5,882	183	3,040
2018년	8,785(↓1.1%)	5,512	228	3,045
2019년	9,049(↑2.9%)	5,369	173	3,507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호평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4
----------	------

발의년월일 : 2020년 2월 5일

발 의 자 : 김호평, 송아량, 권수정,  
김재형, 서윤기, 송정빈,  
오현정, 이경선, 이동현,  
이병도, 이준형, 정진술,  
최 선, 한기영 의원(14명)

## 1. 제안이유

「청년기본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청년기본법」의 개정사항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에 구체화하여 청년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1호).

나.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규정함(안 제19조 신설).

다. 청년의 날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행사와 교육 및 홍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2조의2 신설).

라. 청년발전에 기여한 공로자에 대한 표창을 규정함(안 제24조 신설).

##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청년기본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차목 카목으로 하고,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청년의 국제협력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며, 제19조, 제22조의2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u>청년고용촉진 특별법</u>」(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p> <p>2. ~ 5. (생략)</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p> <p>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p> <p>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p> <p>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p>	<p>제3조(용어의 정의) ----- -----.</p> <p>1. ----- 「<u>청년기본법</u>」----- ----- ----- -.</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6조(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p> <p>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p> <p>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p> <p>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p> <p>나. 청년의 능력 등의 개발</p> <p>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p>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신 설>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신 설>

제19조 ~ 제21조 (생략)

제22조 (생략)

<신 설>

<신 설>

라.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

마. 청년의 부채 경감

바. 청년의 생활안정

사. 청년 문화의 활성화

아. 청년의 권리보호

자. 청년의 건강증진

차. 청년의 국제협력

카.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 분야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 시장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 ~ 제22조 (현행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와 같음)

제23조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2조의2(청년의 날) 시장은 청년지원 및 청년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표창) 시장은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년 또는 청년

발전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  
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  
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청년의 날), 제24조(표창)을 신설함에 따라 청년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비용 및 표창장 제작 비용 발생
- \* 단, 같은 조례안 제3조제1호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청년기본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

##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22조의2(청년의 날), 제24조(표창) 해당]

1) 추계결과 ≍ 1,527,58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1,527,580천원으로 연평균 305,516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제22조의2 청년의 날(행사 및 교육·홍보사업)은 (사)청년과 미래가 개최한 ‘대한민국 청년의 날’ 자료를 준용하되, 행사 참가대상 규모를 30,000명으로 전제하여 추계
  - \* (사)청년과 미래의 ‘대한민국 청년의 날’ 예산 및 참가대상 규모
    - 2019년 예산(홍보비 포함) : 508,277천원 (붙임 참고)
    - 행사 참가대상 규모 : 50,000명
  - 교육 사업은 홍보 사업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전제하여 별도의 사업비 발생하지 않음
  - 제24조 표창은 매년 표창 대상을 100건으로 전제하고 표창장 제작비는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제작비(5,500원)를 준용하여 추계
  - 비용은 2021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나. 기술적 추계 곤란

- 같은 조례안 제19조(청년의 국제협력)의 신설은 청년의 국제 평화증진 운동과 국제 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합계) ≙ 1,527,580천원
  - 총비용 =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비용 + 표창장 제작 비용
  - = 1,524,830천원 + 2,75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합 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비용 (제22조의2)	304,966	304,966	304,966	304,966	304,966	1,524,830
	표창장 제작 비용 (제24조)	550	550	550	550	550	2,750
	소계(b)	305,516	305,516	305,516	305,516	305,516	1,527,580
	총비용(b-a)	305,516	305,516	305,516	305,516	305,516	1,527,580

가. 청년의 날 행사 및 교육·홍보 비용 =  $\sum_{i=1}^5$ (연간행사및교육·홍보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행사 및 교육·홍보 비용 ≙ 304,966천원
  - 행사 및 교육·홍보비는 (사)청년과 미래의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비(홍보비 포함 508,277천원)를 준용하되, 참가대상 규모를 50,000명에서 30,000명으로 낮춰서 추계

나. 표창장 제작 비용 =  $\sum_{i=1}^5$ (연간행사및교육·홍보비용)<sub>i</sub>

i = 비용추계 연차(2021년~2025년)

- 연간 표창장 제작 비용 ≙ 550천원
  - ≙ 표창 대상 건수 × 제작 비용
  - ≙ 100건 × 5,500원
  - 표창 대상 건수는 매년 100건으로 전제
  - 제작 비용은 서울시 행정국 인사과 제작비 준용

## 5.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

**붙임**

**(사)청년과 미래 ‘대한민국 청년의 날’ 2019년 예산 내역**

□ 사업 목적

- 청년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의 공론화 및 사회적 공감대 확산
- 3.1 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 세대인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場 마련
- 대한민국 대표 자발적 청년 참여형 축제로서 청년의 청년에 의한 청년을 위한 행사 개최를 통한 청년 세대 문화 이해의 場 마련

□ 2019년 예산 내역

대분류	세부내역	예산
<b>‘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b>		<b>508,277천원</b>
시설사용료	장소사용료 및 청소대행업체	8,800천원
시설(부스)	캐노피, 현수막, 구조물 등	41,140천원
시스템	무대, 음향, 조명 등	33,000천원
사전행사	발대식	6,270천원
행사운영	단체복, 명찰, 인건비 등	154,132천원
주요프로그램	플래시몹 등 8개 프로그램	66,385천원
축하공연	축하공연자 섭외	165,000천원
홍보	제작물 및 온라인 광고	33,550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